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(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)



구 미 시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구입 필요
- 주행거리 증가에 따라 차량 정비를 위한 예비차량 구입 필요

2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- 대상 : 광역철도 전동차량 11편성(운행차량 9편성 / 예비차량 2편성)

구분	소유차량	운행차량	예비차량	예산액(부담률)	비고
계	22량	18량	4량	977억원(100%)	
대구광역시	11량	9량	2량	488.5억원(50%)	
구미시	4량	3량	1량	162.84억원(16.6%)	
경산시	4량	3량	1량	162.83억원(16.6%)	
칠곡군	3량	3량	-	162.83억원(16.6%)	

※ 운행차량은 「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」에 따라, 광역철도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로 구매했으며, 개통 이후 예비차량은 별도의 예산(자체예산) 편성을 통해 구매해야함.

※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(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시행)

(사업기간) 2016 ~ 2027 *(25년 현재)차량기지 개량 공사 등 부수 공종 진행중

(총사업비) 2,105억원[국비 1,474(70%) 지방 631(30%)(대구 255, 경북 376)]

- (건설비) 1,328억원 / (차량구입비) 777억원

(사업위치) 경부선[구미~대구~경산 L=61.9km]

(사업내용) 정차역 개량 및 신설(신설3-사곡,북삼,서대구 개량5)

○ 기준가격 : 162.84억원(국비 90.67억원 / 시비72.17억원) * 통상 구매가액

○ 사업비 : 977억원[국비 544(56%), 지방비 433(44%)]

※ 운행차량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[사업비 777억원 중 544억원(70%)지원]

• 운행차량 777억원(9편성) / 편성당 약 87억원

→ '21년 구매 계약 및 '24. 12. 14. 운행

• 예비차량 200억원(2편성) / 편성당 약 100억원

→ '26년 구매 계약 및 '28. 10월 운행 예정

○ 사업기간 : 2021 ~ 2028년

○ 추진현황

• 열차구입 제작 착수(한국철도공사) : '21. 6.

• 철도 개통식 및 운영개시 : '24. 12.

○ 향후추진계획

• 예비 차량 구매 계약(한국철도공사 대행) : '26. 5.

• 예비 차량 구매 계약금 및 1차 대금 납부 : '26. 5.

• 예비 차량 구매 2차 대금 납부 : '27. 5.

• 예비 차량 구매 3차 대금 납부 : '28. 9.

• 예비 차량 운행 : '28. 10.

※ 참고자료

○ 대경선 운행실적 ('24. 12. 14 ~ '25. 7. 31)

• 역별 이용객 : 대구역 > 구미역 > 동대구역 > 경산역 > 사곡역 순

(단위 : 명, %)

구 분	합계	구미	사곡	왜관	서대구	대구	동대구	경산
이용객	6,223,939	1,181,351	743,444	645,298	416,532	1,324,883	988,924	923,507
비 중	100	19.1	11.9	10.3	6.7	21.3	15.9	14.8
일평균	27,061	5,188	3,232	2,806	1,811	5,760	4,300	4,015

○ 운행전동차량 제원

《 운행 전 동 차 량 제 원 》

- ▶ 차 량 명 : 대구권 광역철도 전동차(AC전용)
- ▶ 제 조 사 : 현대로템(주)
- ▶ 편성구성 : 2량 1편성(Mc-Mc*)
*Mc: 운전실, 집전장치, 주변압기, 보조전원장치, 동력원 구조
- ▶ 차량가액 : 1량당 43억원(18량-777억원) *16량 운행, 2량 대기
- ▶ 제작년도 : 2021 ~ 2024
- ▶ 차체길이 : 20,470mm
- ▶ 차 체 폭 : 3,120mm
- ▶ 차량높이 : 3,750mm
- ▶ 구동방식/제어방식 : 동력분산식 / VVVF 인버터 제어방식
- ▶ 가속도 : 3.0km/h/s 이상(35km/h 까지)
- ▶ 설계 최고속도 : 110km/h

○ 대경선 운행 개요

《 대 경 선 운 행 개 요 》

- ▶ 사업시행 : 2024. 12. 14. ~
- ▶ 구 간 : 경부선(구미~사곡~왜관~서대구~대구~동대구~경산) 61.85km
- ▶ 열차편성 : 9편성(18량) *8편성 운행, 1편성 대기
- ▶ 탑승인원 : 296명/1편성(1량당 148명)
- ▶ 배차간격 : 침두 19.2분, 비침두 25.4분
- ▶ 운행횟수 : 1일 편도 100회(경산 96회)

3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량, 백만원)

구 분	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계	2건	4	16,284	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1건	1	3,333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1건	3	12,951

취득 재산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량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		4	16,284				
취득	기타 (기계기구)	차량기지 (구미역 외 7개소)	3	12,951	2026	소유권 이전	한국 철도 공사	운행 차량
		〃	1	3,333	2028	구입	구미시	예비 차량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 비용추계서 (대경선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및 구입)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대경선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입비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대경선 개통을 위한 전동차량은 「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」의 총사업비로 지출됐으며('21~'24), 차량정비를 위한 예비차량은 별도의 차량구입비로 지출 예정('26~'28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출	◦ 구입비	1,333	1,000	1,000	-	-	3,333
	계	1,333	1,000	1,000	-	-	3,333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시 비		1,333	1,000	1,000	-	-	3,333

5. 부대의견

- 지자체 예산 부담을 위한 국비 및 도비 지속 건의

6. 작성자

- 대중교통과 광역교통팀 신우성(054-480-2928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산 출 내 역	비 고
총 계	3,333		
구입비	3,333	● 대경선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입	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~ 5. 생략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7.~ 11. 생략

② 생략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8조(중요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

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"

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(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② ~ ④ 생략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

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

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

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
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2.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 (대중교통과)
입 안 자	과 장	임 응 건 (임 춘 욱)
	팀 장	정 세 황 (전 종 훈)
	담 당 자	정 민 주 (480-5073) (신 우 성) (480-2928)